



제439회국회(정기회)
제1차보건복지위원회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 추가〉

■ 박희승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7863호)

2026. 9.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상지원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3
1. 개정안의 내용	3
2. 검토의견	7
3. 관계 부처 및 관련 단체 의견	19

I. 개요

1.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박희승의원 등 11인
- (2) 제 안 일 : 2026. 3. 30.
- (3) 회 부 일 : 2026. 3. 31.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의료법」에서는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인이 신문·인터넷 신문 또는 정기간행물, 현수막, 벽보, 전단 및 교통시설·교통수단에 표시되는 것이나 전광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터넷 매체나 광고매체를 이용하여 의료광고를 하려는 경우 미리 자율심의기구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에는 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가 있으며 이들 단체는 심의 대상 진료과목이 의학, 치의학, 한의학 중 어떠한 영역에 해당되는지 혹은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누구인지 등에 따라서 의료광고 심의업무를 분할하여 담당하고 있으며, 의료광고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를 분기별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있음.

그러나 의료광고 모니터링 결과에 대한 사후조치는 미흡한 수준으로 파악되었음.

보건복지부는 2023년 12월 11일부터 2024년 2월 13일까지 약 2달간

의료광고 모니터링을 시행한 결과, 모니터링 전체 409건 중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불법 의료광고 건수가 366건에 해당하는 바, 의료광고 관리 및 모니터링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불법 의료광고에 대한 모니터링과 적절한 조치는 불법 광고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국민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매우 중요함에 비하여 기존의 자율심의기구 형태가 다양한 의료기관의 규모와 전문·요양·재활 등 갈수록 세분화·전문화되는 의료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심의·관리에 한계가 발생하고 있음.

이처럼 불법 의료광고에 대한 관리 강화와 의료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자율심의기구의 역할 개선과 함께 일정수준의 공신력을 확보한 법정단체를 자율심의기구로 지정하는 조치가 병행될 필요가 있음.

이에 따라 제52조에 따른 의료기관단체를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로 추가 지정하여 불법 의료광고에 대한 관리기관을 확대하고, 병원급의 의료기관을 대표하는 법정단체에 병원에 대한 교육·홍보와 모니터링 기능을 제고하는 등 의료광고에 대한 정책·관리를 강화하여 불법 의료광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57조 및 제57조의2).

II. 주요 내용별 검토

1.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의료기관단체를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로 추가함으로써 병원급의료기관의 의료광고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 57조 및 제57조의2).

현행	개정안
제57조(의료광고의 심의) ① (생략)	제57조(의료광고의 심의)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심의를 위한 조직 등을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한 후 의료광고 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② -----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신설>	2. 제52조에 따른 의료기관단체(치과병원단체 및 한방병원단체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57조의2에서 같다)
2. (생략)	3. (현행 제2호와 같음)
③ ~ ⑤ (생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⑥ 제2항제1호에 따른 자율심의기구가 수행하는 의료광고 심의 업무 및 이와 관련된 업무의 수행에 관하여는 제29조제3항, 제30조제1항, 제32조, 제83조제1항 및 「민법」 제37조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제2항제2호에 따른 자율심의기구가 수행하는	⑥ ----- ----- ----- ----- -----아니하고, 제2항제2호에 따른 자율심의기구가 수행하는

현행	개정안
의료광고 심의 업무 및 이와 관련된 업무의 수행에 관하여는 「민법」 제3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 ~ ⑪ (생략) 제57조의2(의료광고에 관한 심의위원회) ① (생략) ② 심의위원회의 종류와 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의사, 의원, 의원의 개설자, 병원, 병원의 개설자, 요양병원(한의학사가 개설한 경우는 제외한다), 요양병원의 개설자, 정신병원, 정신병원의 개설자, 종합병원(치과는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종합병원의 개설자, 조산사, 조산원, 조산원의 개설자가 하는 의료광고의 심의 2. 3. (생략) <신설>	<u>의료광고 심의 업무 및 이와 관련된 업무의 수행에 관하여는 제83조제1항 및 「민법」 제37조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제2항제3호에</u>----- ----- ----- -----. ⑦ ~ ⑪ (현행과 같음) 제57조의2(의료광고에 관한 심의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조산사----- ----- ----- 2. 3. (현행과 같음) 4. 병원의료광고심의위원회: 병원, 병원의 개설자, 요양병원(한의학사가 개설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요양병원의 개설자, 정신병원, 정신병원의 개설자, 종합병원(치과는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종합병원의 개설자

현행	개정안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3. 한방의료광고심의위원회: 제5항제1호·제2호 및 제4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람을 각각 1명 이상 포함하되, 같은 항 제4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람이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신 설> ⑤ 심의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자율심의기구의 장이 위촉한다. 1. ~ 3. (생략) <신 설> 4. ~ 9. (생략) ⑥ (생략)	-----. 3. ----- -----및 제4호부터 제10호까지----- -----항 제5호부터 제10호까지----- -----. 4. 병원의료광고심의위원회: 제5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같은 항 제5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람을 각각 1명 이상 포함하되, 같은 항 제5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람이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⑤ ----- ----- -----. 1. ~ 3. (현행과 같음) 4. 제52조에 따른 의료기관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5. ~ 10. (현행 제4호부터 제9호까지와 같음) ⑥ (현행과 같음)
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2. 검토의견

- 현행법 제56조는 의료인등(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광고(의료인등이 신문·잡지·음성·음향·영상·인터넷·인쇄물·간판,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의료행위, 의료기관 및 의료인등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면서(제1항), 의료인등이라도 그 방법 또는 내용이 국민의 보건과 건전한 의료경쟁의 질서를 해치거나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등의 의료광고는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제2항). 또한 「방송법」 제2조제1호의 방송의 방법으로는 의료광고를 할 수 없음(제3항).¹⁾

- 1) 「의료법」 제56조(의료광고의 금지 등) ①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인(이하 “의료인등”이라 한다)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의료인등이 신문·잡지·음성·음향·영상·인터넷·인쇄물·간판,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의료행위, 의료기관 및 의료인등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의료광고”라 한다)를 하지 못한다. ②의료인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광고를 하지 못한다.
1. 제53조에 따른 평가를 받지 아니한 신의료기술에 관한 광고
 2. 환자에 관한 치료경험담 등 소비자로 하여금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3.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
 4. 다른 의료인등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과 비교하는 내용의 광고
 5. 다른 의료인등을 비방하는 내용의 광고
 6. 수술 장면 등 직접적인 시술행위를 노출하는 내용의 광고
 7. 의료인등의 기능, 진료 방법과 관련하여 심각한 부작용 등 중요한 정보를 누락하는 광고
 8.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는 내용의 광고
 9.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내용의 광고
 10. 신문, 방송, 잡지 등을 이용하여 기사(記事) 또는 전문가의 의견 형태로 표현되는 광고
 11. 제57조에 따른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
 12. 제27조제3항에 따라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국내광고
 13.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제45조에 따른 비급여 진료비용을 할인하거나 면제하는 내용의 광고
 14. 각종 상장·감사장 등을 이용하는 광고 또는 인증·보증·추천을 받았다는 내용을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내용을 표현하는 광고.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58조에 따른 의료기관 인증을 표시한 광고
나. 「정부조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특별지방행정기관 및 그 부속기관, 「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받은 인증·보증을 표시한 광고
다. 다른 법령에 따라 받은 인증·보증을 표시한 광고
라. 세계보건기구와 협력을 맺은 국제평가기구로부터 받은 인증을 표시한 광고 등 대통령령

또한, 제57조에서는 의료인들이 신문, 인터넷신문, 정기간행물, 일부 옥외광고물, 전광판, 인터넷매체, 비대면진료 중개매체 등을 이용하여 의료광고를 하려는 경우 해당 의료광고가 제5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자율심의기구의 사전심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²⁾

으로 정하는 광고

15. 그 밖에 의료광고의 방법 또는 내용이 국민의 보건과 건전한 의료경쟁의 질서를 해치거나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의 광고

③의료광고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는 하지 못한다.

1. 「방송법」 제2조제1호의 방송
2. 그 밖에 국민의 보건과 건전한 의료경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 ④제2항에 따라 금지되는 의료광고의 구체적인 내용 등 의료광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⑤ 보건복지부장관,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부터 제9호까지를 위반한 의료인등에 대하여 제63조, 제64조 및 제67조에 따른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의료법」 제57조(의료광고의 심의) ①의료인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체를 이용하여 의료광고를 하려는 경우 미리 의료광고가 제5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제2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1.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문·인터넷신문 또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기간행물
2.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옥외광고물 중 현수막(懸垂幕), 벽보, 전단(傳單) 및 교통시설·교통수단에 표시(교통수단 내부에 표시되거나 영상·음성·음향 및 이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지는 광고를 포함한다)되는 것
3. 전광판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터넷 매체(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을 포함한다)

4의2. 비대면진료 중개매체

5. 그 밖에 매체의 성질, 영향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매체

②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심의를 위한 조직 등을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한 후 의료광고 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제28조제1항에 따른 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
2.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단체

③ 의료인등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만 구성된 의료광고에 대해서는 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한 기관 또는 단체(이하 “자율심의기구”라 한다)의 심의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1. 의료기관의 명칭·소재지·전화번호
2. 의료기관이 설치·운영하는 진료과목(제43조제5항에 따른 진료과목을 말한다)
3.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료인의 성명·성별 및 면허의 종류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④ 자율심의기구는 제1항에 따른 심의를 할 때 적용하는 심의 기준을 상호 협의하여 마련하여야 한다.
- ⑤ 의료광고 심의를 받으려는 자는 자율심의기구가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⑥ 제2항제1호에 따른 자율심의기구가 수행하는 의료광고 심의 업무 및 이와 관련된 업무의 수행에 관하여는 제29조제3항, 제30조제1항, 제32조, 제83조제1항 및 「민법」 제37조를 적용하지

□ 이때, 자율심의기구는 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 및 일정 요건을 갖춘 소비자단체로서 자율심의를 위한 조직 등을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한 후 의료광고 심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구로, 자율심의기구가 의료광고를 심의하기 위해서는 현행법 제57조의2에 따라 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함. 이에 따라 현재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및 대한한의사협회가 자율심의기구로서 심의위원회를 두고 있음.³⁾

아니하며, 제2항제2호에 따른 자율심의기구가 수행하는 의료광고 심의 업무 및 이와 관련된 업무의 수행에 관하여는 「민법」 제3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 자율심의기구는 의료광고 제도 및 법령의 개선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⑧ 제1항에 따른 심의의 유효기간은 심의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⑨ 의료인등이 제8항에 따른 유효기간의 만료 후 계속하여 의료광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에 자율심의기구에 의료광고 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자율심의기구의 구성·운영 및 심의에 필요한 사항은 자율심의기구가 정한다.

⑪ 자율심의기구는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심의 관련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제5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여야 한다.

3) 「의료법」 제57조의2(의료광고에 관한 심의위원회) ① 자율심의기구는 의료광고를 심의하기 위하여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종류와 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의사, 의원, 의원의 개설자, 병원, 병원의 개설자, 요양병원(한의학자가 개설한 경우는 제외한다), 요양병원의 개설자, 정신병원, 정신병원의 개설자, 종합병원(치과는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종합병원의 개설자, 조산사, 조산원, 조산원의 개설자가 하는 의료광고의 심의

2. 치과의료광고심의위원회: 치과의사, 치과의원, 치과의원의 개설자, 치과병원, 치과병원의 개설자, 종합병원(치과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종합병원의 개설자가 하는 의료광고의 심의

3. 한방의료광고심의위원회: 한의사, 한의원, 한의원의 개설자, 한방병원, 한방병원의 개설자, 요양병원(한의학자가 개설한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요양병원의 개설자가 하는 의료광고의 심의

③ 제57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자율심의기구 중 의사회는 제2항제1호에 따른 심의위원회만, 치과의사회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심의위원회만, 한의사회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심의위원회만 설치·운영하고, 제5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율심의기구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심의위원회만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④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제2항 각 호의 심의위원회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구성하여야 한다.

1.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제5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람을 각각 1명 이상 포함하되, 같은 항 제4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람이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2. 치과의료광고심의위원회: 제5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람을 각각 1명 이상 포함하되, 같은 항 제4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람이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3. 한방의료광고심의위원회: 제5항제1호·제2호 및 제4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람을 각각 1명 이

- 참고로, 2018년 개정 이전의 「의료법」(법률 제15522호)에서는 의료광고 사전심의의 주체가 보건복지부장관이었으나(의협, 치의협 및 한의협에 위탁),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가 「헌법」의 사전검열 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2015.12.23.)에 따라 2018년 개정(법률 제15540호)을 통해 사전심의의 주체를 자율심의기구로 변경하였음.⁴⁾
- 각 의료광고심의위원회는 의료광고 사전심의를 대한 수수료를 받고 있는데, 광고의 종류에 따라 건당 5.5만원에서 55만원 수준으로 책정되어 있음.

상 포함하되, 같은 항 제4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람이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⑤ 심의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자율심의기구의 장이 위촉한다.

1. 의사
2. 치과의사
3. 한의사
4. 「약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약사
5. 「소비자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비자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6. 「변호사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제78조에 따른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변호사로서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7.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 중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 증진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8.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단체로서 환자의 권익 보호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9. 그 밖에 보건의료 또는 의료광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자율심의기구가 정한다.

- 4) (2015. 12. 23. 2015헌바75) 헌법재판소의 구체적인 위헌 결정 요지를 살펴보면,
- i)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위탁을 받은 각 의사협회가 사전심의를 행하고 있으나 사전심의의 주체인 보건복지부장관은 언제든지 위탁을 철회하고 직접 의료광고 심의업무를 담당할 수 있고, ii) 「의료법 시행령」은 심의위원회의 구성을 직접 규율하고 있으며, iii) 심의기관의 장이 심의 및 재심의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해야하고, iv)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 단체에 대해 재정지원을 할 수 있으며, v) 심의기준·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각 의사협회는 행정권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독립적이고 자율적으로 사전심의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워 “사전검열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임.

<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심의수수료 >

구분		의료광고 심의위원회	치과의료광고 심의위원회	한방의료광고 심의위원회
직권 심의	[별표1] 5)의 내용만을 광고하는 경우	55,000원		
전문 심의	[별표1] 이외의 온라인 검색 광고 또는 한줄광고	55,000원	110,000원	
	[별표1] 이외의 내용을 광고하는 경우(기타)	110,000원		
	[별표1] 이외의 내용이 포함된 광고 학회 등에 의견조회가 필요한 경우	220,000원 ~ 550,000원	220,000원	
	[별표1] 이외의 내용이 포함된 광고 중 분량이 많은 경우		220,000원 ~ (+α) (A4용지 5장, 기준 초과 시 5장 당 110,000원 할증)	
	동영상광고(플래시 포함)	-	220,000원 ~ (+α) (콘티이미지 20컷 또는 재생 1분, 기준 초과 시 20컷 또는 1분 당 110,000원 할증)	220,000원 ~ (+α) (콘티 이미지 10컷, 기준 초과 시 20컷 당 110,000원 할증)
기타 심의	재심의 청구	※ 기승인 광고 재심 요청시 심의수수료 50% 적용	55,000원	
	심의유효기간 연장	-	기 승인광고 심의 수수료의 50% 적용	-

자료: 각 자율심의기구

- 현행법은 의료광고 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를 제28조제1항에 따른 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 및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단체로 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기존의 자

5) 각 심의위원회는 운영규정을 마련하고 있으며, 각 운영규정의 [별표1]은 위원장의 직권 심의대상을 나열하고 있음. 각 위원회별 직권 심의대상은 다음과 같음.

울심의기구로는 전문·요양·재활 등 갈수록 세분화·전문화되는 다양한 규모의 의료기관 특성을 반영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심의·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인식하에, 제52조에 따른 의료기관단체(치과병원단체 및 한방병원단체 제외)도 의료광고 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법상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치과의료광고심의위원회 및 한방의료광고심의위원회 등 3종류로 구분하고 있는 심의위원회가 병원의료광고심의위원회를 포함한 4종류로 확대되며, 신설되는 병원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은 현재의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심의 대상 중 병원과 관련된 부분임.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치과의료광고 심의위원회	한방의료광고 심의위원회
1.진료담당 의료인의 성명 성별 및 그 면허의 종류	1.진료담당의료인의 성명·성별 및 그 면허의 종류	1.진료담당 의료인의 성명, 성별 및 그 면허의 종류
2.전문과목 및 진료과목	2.의료기관의 명칭 및 그 소재지와 전화번호 및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2.전문과목 및 진료과목
3.의료기관의 명칭 및 그 소재지(홈페이지)와 전화번호	3.진료일·진료시간	3.의료기관의 명칭 및 그 소재지와 전화번호 및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4.진료일 진료시간	4.응급의료 전문인력·시설·장비 등 응급의료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4.진료일 진료시간
5.응급의료 전문인력 시설 장비 등 응급의료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5.예약진료의 진료시간·접수시간·진료 인력 등에 관한 사항	5.예약진료의 진료시간 접수시간 진료인력 진료과목 등에 관한 사항
6.예약진료의 진료시간 접수시간 진료인력 진료과목 등에 관한 사항	6.야간 및 휴일진료의 진료일자·진료시간·진료인력 등에 관한 사항	6.야간 및 휴일진료의 진료일자 진료시간 진료인력 등에 관한 사항
7.야간 및 휴일진료의 진료일자 진료시간 진료인력 등에 관한 사항	7.주차장에 관한 사항	7.주차장에 관한 사항
8.주차장에 관한 사항	8.의료인 및 보건의료인의 환자수에 대한 배치 비율 및 각 인원수	8.의료인 및 보건의료인의 환자수에 대한 배치비율 및 각 인원수
9.의료인 및 보건의료인의 환자수에 대한 배치 비율 및 각 인원수	9.의료인의 해당 분야에서의 1년 이상 임상경력	9.의료인의 해당 분야에서의 1년 이상 임상경력
10.의료인의 해당분야에서의 1년 이상 임상경력	10.의료법 제32조의 3의 규정에 의한 시설 등의 공동이용에 관한 사항	10.의료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 등의 공동이용에 관한 사항
11.의료법 제 39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 등의 공동이용에 관한 사항	11.의료법 제4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최근 3년 이내의 의료기관 평가결과	11.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최근 3년 이내의 의료기관 평가결과
12.의료법 제 58조의 규정에 의한 최근 3년 이내의 의료기관 인증 평가결과	12.기타위원회에서 위원장 직권심의를 결정한 사항	12.기타 위원장 직권으로 심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
13.기타 위원장 직권으로 심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		

< 현행 및 개정안의 의료광고심의위원회 구분 및 심의대상 비교 >

구분	현행 제57조의2제2항 각 호	개정안
의료광고 심의위원회	의사, 의원, 의원의 개설자, 병 원, 병원의 개설자, 요양병원(한 의사가 개설한 경우는 제외한 다), 요양병원의 개설자, 정신병 원, 정신병원의 개설자, 종합병 원(치과는 제외한다. 이하 이 호 에서 같다), 종합병원의 개설자, 조산사, 조산원, 조산원의 개설 자가 하는 의료광고의 심의	의사, 의원, 의원의 개설자, 조산 사, 조산원, 조산원의 개설자가 하는 의료광고의 심의
치과 의료광고 심의위원회	치과의사, 치과의원, 치과의원의 개설자, 치과병원, 치과병원의 개설자, 종합병원(치과만 해당한 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종합 병원의 개설자가 하는 의료광고 의 심의	좌동
한방 의료광고 심의위원회	한 의사, 한의원, 한의원의 개설 자, 한방병원, 한방병원의 개설 자, 요양병원(한 의사가 개설한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 서 같다), 요양병원의 개설자가 하는 의료광고의 심의	좌동
병원 의료광고 심의위원회	<신설>	병원, 병원의 개설자, 요양병원 (한 의사가 개설한 경우는 제외한 다), 요양병원의 개설자, 정신병 원, 정신병원의 개설자, 종합병 원(치과는 제외한다. 이하 이 호 에서 같다), 종합병원의 개설자 가 하는 의료광고의 심의

- 즉, 개정안은 대한병원협회가 병원의료광고심의위원회를 신설하
여 현재 대한의사협회의 의료광고심의위원회가 심사하고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 병원급 의료기관 및 조산원’ 중 ‘병원급 의료
기관’의 의료광고 심의를 담당하도록 하려는 것임.⁶⁾

6)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②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의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각각 그 의료행
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의원

□ 2024년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수행한 ‘의료광고 관리방안 연구’에 따르면 최근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의료광고에서 불법 의료광고가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음. 특히 디지털 플랫폼 중심으로 광고가 확대되면서 규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이에 따른 허위·과장 광고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함.⁷⁾

또한, 급증하는 의료광고를 고려할 때 현재의 3개 단체가 모든 광고의 사전 심의를 수행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의료광고 관리 개선방안 중 하나로 심의기구 확대를 통한 심의건수 분담을 제안한 바 있음.

□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대한병원협회로 하여금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심의 업무를 분담토록 하려는 개정안의 입법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음.

나. 치과의원

다. 한의원

2. 조산원: 조산사가 조산과 임산부 및 신생아를 대상으로 보건활동과 교육·상담을 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3. 병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병원

나. 치과병원

다. 한방병원

라. 요양병원(「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 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마. 정신병원

바. 종합병원

7) 보고서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보건복지부와 의료광고심의위원회가 시행한 의료광고 모니터링을 분석한 결과, 성형수술, 피부과 시술, 비만 관리 등 미용 관련 광고에서 전후 사진과 체험담을 활용한 사례가 빈번하고, 인플루언서가 특정 병원이나 시술을 간접적으로 홍보하면서 광고임을 명시하지 않거나, 틱톡, 유튜브 쇼츠와 같은 짧은 영상 플랫폼에서 치료 과정을 그대로 노출하여 소비자의 관심을 끄는 방식의 광고가 확산되고 있으며, AI 이미지 편집 기술을 이용해 실제보다 과장된 전후 사진을 제작함으로써 소비자를 오도하는 사례가 허위·과장 광고의 심각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고 분석함.

<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 현황 >

구분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치과의료광고 심의위원회	한방의료광고 심의위원회
소속 단체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 의사협회
전담 부서	의무법제국 의료광고심의팀	정책국 의료광고팀	법무국 의료광고심의팀
상근 인력	9명	5명	6명

자료: 보건복지부, 각 자율심의기구

<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별 의료광고 심의 실적 >

구분		총 접수건수 (A+B+C)	승인(원안+수정) (A)	조건부(진행중) (B)	불승인 (C)
의료광고 심의 위원회	2023	16,230	14,926	0	1,304
	2024	20,999	19,068	54	1,877
	2025	23,159	19,121	3,190	848
치과의료 광고심의 위원회	2023	4,944	4,799	2	143
	2024	7,086	6,774	68	244
	2025	5,324	3,657	1,667	-
한방의료 광고심의 위원회	2023	5,859	5,729	-	130
	2024	6,225	6,126	-	99
	2025	9,369	6,766	2,528	75

주) 2025년: 2025.1.1~11.30

자료: 각 자율심의기구

< 불법 의료광고 매체별 현황 >

(단위: 개, %)

변수 (합계=10,666)	전체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 의사협회	
	N	%	N	%	N	%	N	%
	10,666	100	2,887	27.07	1,531	14.35	6,248	58.58
광고매체								
교통시설	248	2.33	195	6.75	27	1.76	26	0.42
벽보	43	0.40	15	0.52	-	-	28	0.45
문자	12	0.11	1	0.03	9	0.59	2	0.03
신문	156	1.46	83	2.87	2	0.13	71	1.14
옥내광고물	23	0.22	-	-	23	1.50	-	-
옥외광고물	90	0.84	12	0.42	70	4.57	8	0.13
인터넷매체	9,423	88.35	2,130	73.78	1,219	79.62	6,074	97.22
인터넷신문	348	3.26	179	6.20	162	10.58	7	0.11
전광판	21	0.20	17	0.59	2	0.13	2	0.03
전단지	54	0.51	39	1.35	11	0.72	4	0.06
정기간행물	22	0.21	16	0.55	5	0.33	1	0.02
현수막	226	2.12	200	6.93	1	0.07	25	0.40

주) “2020~2024년(단, 2020년 : 7~12월, 2024년 : 1~3월 통계이며, 대한치과의사협회는 2021년 11월부터)”

자료: 한국보건 의료연구원, ‘의료광고 관리방안 연구’, 2024.12.

□ 다만, 개정안은 심의위원회의 종류에 병원의료광고심의위원회를 추가하면서 심의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는 사람에 ‘제52조에 따른 의료기관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을 추가하고 있음. 이에 따라 기존의 각 심의위원회 구성에도 대한병원협회 추천 위원이 포함되는 것으로 변경됨.

< 개정안의 심의위원회 구성 >

구분 (개정안 기준)	의료광고 심의위원회	치과 의료광고 심의위원회	한방 의료광고 심의위원회	병원 의료광고 심의위원회
1.의사	-	1명 이상	1명 이상	1명 이상
2.치과의사	1명 이상	-	1명 이상	1명 이상
3.한의사	1명 이상	1명 이상	-	1명 이상
4.병원협회 추천	1명 이상	1명 이상	1명 이상	-
5.약사	1명 이상	1명 이상	1명 이상	1명 이상
6.소비자단체 추천	1명 이상	1명 이상	1명 이상	1명 이상
7.변호사협회 추천	1명 이상	1명 이상	1명 이상	1명 이상
8.여성단체 추천	1명 이상	1명 이상	1명 이상	1명 이상
9.환자단체 추천	1명 이상	1명 이상	1명 이상	1명 이상
10.그 외 전문가	1명 이상	1명 이상	1명 이상	1명 이상
비고	제5호부터 제10호까지가 전체의 1/3 이상			

현행 제57조의2제5항 각 호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그 외로 구분되는데, 제1호부터 제3호까지는 각각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로 의료광고의 주체에 해당하며, 제4호부터 제9호까지(개정안 기준 제5호부터 제10호까지)는 관련 전문가 및 공익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볼 수 있음.⁸⁾

현행 제57조의2제4항은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치과의료광고심의위원회, 한방의료광고심의위원회 각각에서 해당 의료광고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이외의 사람을 각각 1명 이상

8) 「의료법」 제57조의2(의료광고에 관한 심의위원회) ⑤ 심의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자율심의기구의 장이 위촉한다.

1. 의사
2. 치과의사
3. 한의사
4. 「약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약사
5. 「소비자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비자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6. 「변호사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제78조에 따른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한 변호사로서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7.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 중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 증진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8.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단체로서 환자의 권익 보호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9. 그 밖에 보건의료 또는 의료광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포함하여 구성하도록 하고 있음.⁹⁾ 이는 전문성을 이유로 해당 의
료광고의 주체로만 심의위원회가 구성될 경우 심의의 객관성에 대
한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보이며, 특히 공익을 대변한다고 볼 수
있는 (현행 기준) 제4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람이 전체 위원의 3분
의 1 이상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런데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광고의 주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
는 병원협회가 추천하는 사람을 각 심의위원회에 1명 이상 의무적
으로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현행 기준) 제4호부터 제9호까지에 해
당하는 위원의 비중이 감소하는 측면이 있음.

현행법상 국가나 의료법인 등을 제외하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만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으므로 대한병원협회는 병원개설자인
의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 또한, 대한병원협회는 병원급 의료기
관(30병상 이상의 의료기관)을 회원으로 하는데,¹⁰⁾ 의료기관 개설
자는 의료인이면서도 경영인인 이중적 지위에 있음.

9) 「의료법」 제57조의2(의료광고에 관한 심의위원회) ④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제2항 각 호의 심의위원회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구성하여야 한다.

1.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제5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람을 각각 1명 이상 포함하되, 같은 항
제4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람이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2. 치과의료광고심의위원회: 제5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람을 각각 1명 이상 포함
하되, 같은 항 제4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람이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3. 한방의료광고심의위원회: 제5항제1호·제2호 및 제4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람을 각각 1명 이
상 포함하되, 같은 항 제4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람이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구
성하여야 한다.

10) 「의료법」

제3조의2(병원등) 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및 요양병원(이하 “병원등”이라 한다)은 30개 이상
의 병상(병원·한방병원만 해당한다) 또는 요양병상(요양병원만 해당하며, 장기입원이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기 위하여 설치한 병상을 말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제52조(의료기관단체 설립) ①병원급 의료기관의 장은 의료기관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보건 향상
에 기여하기 위하여 전국 조직을 두는 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09. 1. 30.>

②제1항에 따른 단체는 법인으로 한다.

따라서, 의료기관의 수익성 관리에 책임이 있는 자들로 구성된 협회가 추천하는 사람을 각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음.

3. 관계 부처 및 관련 단체 의견

1) 보건복지부 (수정수용)

-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의료광고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법정단체인 병원협회를 자율심의기구로 추가하려는 입법 취지에 공감함. 다만, 기존 의사협회 의료광고자율심의기구의 기능을 나누는 것이 아닌 병원협회 및 치과병원협회의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광고에 대한 사전심의 기능을 추가하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음.

2) 대한의사협회 (반대)

- 현재의 자율심의기구는 ‘학문 및 면허영역’ 기준으로 구분되어 있으나, 의료기관의 ‘시설 및 규모’를 중심으로 심의기구가 추가될 경우 동일한 진료과목이나 시술에 대한 광고임에도 의료기관 종별에 따라 적용되는 심의 기준이 달라져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 기존의 전문가 단체(의사회 등)는 고도의 의학적 전문성과 직업윤리를 바탕으로 환자건강 보호 및 허위·과장 광고 차단에 중점을 두고 있으나, 병원급 의료기관 단체는 의료 경영자단체의 성격을

가지므로 이해관계(수익창출)에서 자유롭기 어려우며, 상업적인 광고에 대한 관대한 심의로 이어져 국민 건강에 직접적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음.

□ 의료행위의 주체는 ‘의료인’이며, 의료광고는 의료행위를 국민에게 알리는 행위이므로 광고 내용의 타당성·적절성 판단 주체도 면허 소지자로 구성된 전문가단체가 되어야 하며, 진료와 무관한 ‘병원의 규모’를 대표하는 단체가 심의를 주도하는 것은 의료법체계와 맞지 않음.

□ 심의기구가 4개로 확대될 경우 업무 중복, 기관 간 권한 충돌, 모니터링 결과 취합 복잡성 가중 등 옥상옥 구조가 우려되며, 불법 광고 발생 시 지역 단체와 기관 단체 간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우려가 있음.

3) 대한치과의사협회 (반대)

□ 자율심의기구가 아니더라도 불법 의료광고에 대하여 신고 및 모니터링 가능하며, 현행 불법 의료광고는 충분히 심의를 받을 수 있는 상황임에도 심의를 받지 않거나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하기에 문제가 되는 것인바, 새로운 심의위원회를 통한 불법 의료광고를 근절하는 효과는 적을 것으로 사료됨.

□ 한편, 불법 의료광고에 대한 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자율심의기구에 불법 의료광고에 대한 제재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적절함

4) 대한한 의사협회 (반대)

- 이미 모든 의료기관에 대한 광고가 심의되고 있음에도 병원만을 대상으로 별도의 심의기구를 신설하여 직접 심의하는 구조는 이해 충돌 가능성이 있으며, 회원 이익보호를 우선하는 방향으로 심의가 왜곡될 가능성이 있음.
- 개정안은 치과병원단체와 한방병원단체를 심의대상에서 제외하는 이유로 ‘기존 치과의사회·한의사회의 심의 영역과의 중복 방지’를 암묵적 근거로 제시하고 있으나, 의사회가 운영하는 의료광고심의 위원회와 병원급 의료기관단체의 심의 영역도 동일하게 중복되는바, 형평에 맞지 않는 차별적 취급으로서 평등원칙 위반 소지가 있음.
- 문제는 사후조치의 미흡이지 심의기구의 수가 부족한 것이 아니므로, 자율심의기구를 신설·추가한다고 하여 불법 의료광고 감소로 이어진다는 인과관계 논리가 부족하며, 심의기구를 추가하면 심의 주체가 불명확하고, 심의기준이 불일치하는 등 혼란이 우려됨.

5) 대한병원협회 (찬성)

- 병원급 의료기관 내 치과 또는 한방과목이 포함되는데, 현재는 심의 요청 시 의료인 단체별 분할 심의(의협은 치과·한방 외 내용, 치의협은 치과, 한의협은 한의과 심의)로 인하여 과도한 비용 및 시간이 소요됨.
- 병원급 의료기관은 병원의 유형 및 규모·기능별로 다양한 속성을 보유하고 있으나 복잡하고 다양한 병원급 의료기관의 현실 반영이 미흡함.

6) 대한치과병원협회 (수정수용)

□ ‘치과병원단체 제외’ 문구를 삭제하고, 대한치과병원협회를 심의주체로 포함할 필요가 있음.

- 대한치과의사협회도 법정 의료기관단체로서 동일한 설립 근거와 법적 지위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개정안에서 본 협회만을 명시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형평성을 저해함.
- 치과병원급 의료기관을 대표하는 대한치과병원협회에 독자적인 심의 및 모니터링 권한을 부여하지 않을 시 세분화·전문화되는 의료기관의 특성을 반영하려는 정책적 노력이 사각지대에 직면할 우려가 있음.

7)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찬성)

□ 의료광고에 대한 정책·관리를 강화하여 불법의료광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려는 본 법안에 찬성함.

문 의 처
02)6788-5494